

서연오��비전 협력사 행동규범

(Code of Conduct for Partners)

제개정 이력	개정번호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주요 제개정 내용
	0	2025.01.02	2025.01.02	초도 제정

목 차

1. 개요

- 1.1 제정목적
- 1.2 적용범위
- 1.3 협력사 책임과 역할

2. 윤리

- 2.1 투명경영 및 반부패
- 2.2 이해상충 방지
- 2.3 불공정 거래 방지
- 2.4 위조부품 방지
- 2.5 수출 제한 및 경제제재 준수
- 2.6 정보보호
- 2.7 지적재산 보호
- 2.8 책임있는 자재 구매

3. 환경

- 3.1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3.2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 3.3 수자원 관리
- 3.4 대기오염물질 관리
- 3.5 폐기물 관리
- 3.6 화학물질 관리
- 3.7 동물복지

4. 노동/인권

- 4.1 차별 금지

목 차

- 4.2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 4.3 근로시간 관리
- 4.4 인도적 대우
- 4.5 결사의 자유 보장
- 4.6 아동노동 금지
- 4.7 강제노동 금지

5. 안전/보건

- 5.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5.2 기계 · 기구 · 설비의 안전 관리
- 5.3 비상상황 대응
- 5.4 사고 관리
- 5.5 안전 진단
- 5.6 보건 관리

6. 경영시스템

- 6.1 기업 성명성 공시
- 6.2 담당자 선임
- 6.3 리스크 점검
- 6.4 교육 및 소통
- 6.5 정보 관리
- 6.6 고충처리 제도 운영
- 6.7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관리
- 6.8 규범 준수

7. 부칙

1. 개요

1.1 제정목적

최근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 디지털화,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산 등 기술 융복합을 통해 전방위적 혁신이 진행 중이며, 서연오토비전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전 협력사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연오토비전은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상호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Drive Sustainability의 지속가능성 실무지침(Global Automotive Sustainability Practical Guidance)을 기준으로 수립되었으며,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행동규범을 참조하였습니다. 다만, 본 행동규범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1.2 적용범위

서연오토비전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인 모든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1.3 협력사 책임과 역할

서연오토비전의 모든 협력사는 경영 의사결정 및 사업 운영과정에 있어 본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연오토비전 및 고객사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은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일부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연오토비전은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개선 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서연오토비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윤리

2.1 투명경영 및 반부패

- 2.1.1 협력사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2.1.2 협력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공갈, 횡령,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약점이나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 됩니다.

2.2 이해상충 방지

- 2.2.1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2.2.2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제안·허가·제공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받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2.3 불공정 거래 방지

- 2.3.1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2.3.2 협력사는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2.3.3 협력사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 2.3.4 협력사는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2.4 위조부품 방지

- 2.4.1 협력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2.4.2 협력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
- 2.4.3 협력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5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 준수

- 2.5.1 협력사는 수출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 2.5.2 협력사는 수출제한,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 2.5.3 협력사는 수출제한, 경제제재 관련 법률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필요시 고객사의 현황 파악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2.6 정보보호

- 2.6.1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6.2 협력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 및 활용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 및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2.7 지적재산 보호

2.7.1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협력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침해 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8 책임있는 자재 구매

2.8.1 협력사는 제품에 포함된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등 분쟁광물¹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2.8.2 협력사는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사회·환경적 이슈를 점검²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8.3 협력사는 광물 및 원재료를 주로 취급하는 경우, 해당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이슈와 관련성이 없음을 자체 확인하거나 대외인증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8.4 협력사는 고객사가 분쟁 지역 광물의 원산지 확인을 포함한 공급망 내 분쟁 지역 광물 사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해야 합니다.

2.8.5 협력사는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사회·환경적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8.6 협력사는 광물 및 원재료를 주로 취급하는 경우, 해당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이슈와 관련성이 없음을 자체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¹ 아프리카 분쟁지역(DR콩고 등 10개국)에서 생산되는 4대 광물로서 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아동노동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광물 수출을 통한 자금을 내전 및 갈등 조장에 사용함에 따라 국제적 우려가 되고 있음.

² 201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시행령을 통해 상장사는 제품 내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2015년 유럽의회는 광물의 수입자 등에게 광물의 원산지 및 이슈점검 결과를 국가별 관할 당국에 신고하도록 함.

3. 환경

3.1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3.1.1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의무 환경 관련 인허가(예: 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변경 신고)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 3.1.2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성과 점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시스템³을 운영해야 합니다.

3.2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 3.2.1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 3.2.2 협력사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3 수자원 관리

- 3.3.1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 3.3.2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 3.3.3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3.4 대기오염물질 관리

- 3.4.1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3.4.2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3.5 폐기물 관리

- 3.5.1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3.5.2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3.5.3 협력사는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매립, 소각 시 환경영향을 미치는 잔유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³ ISO14001 표준 등 (ISO14001 표준은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 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EMS)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해당 표준에 적합하게 환경경영을 수행하고 있는지 제3자 기관을 통해 인증 받을 수 있음)

3.6 화학물질 관리

- 3.6.1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의 구매에서부터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 3.6.2 협력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⁴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7 동물복지

- 3.7.1 협력사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정한 동물의 5대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 (1)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hunger or thirst)
- (2)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discomfort)
- (3)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pain, injury or disease)
- (4) 정상적인 행동표현의 자유(Freedom to express (most) normal behavior)
- (5)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and distress)

⁴ EU,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2006)에 관한 사항 등

4. 노동/인권

4.1 차별 금지

- 4.1.1 협력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결혼여부, 임신,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4.1.2 협력사는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 임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4.1.3 협력사는 임직원의 모집, 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4.2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 4.2.1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4.2.2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4.2.3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경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3 근로시간 관리

- 4.3.1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 4.3.2 협력사는 임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 4.3.3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4.4 인도적 대우

- 4.4.1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 4.4.2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고지하며,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4.4.3 협력사는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괴롭힘을 금지해야 하며, 직장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에게는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5 결사의 자유 보장

- 4.5.1 협력사는 본 협력사 행동강령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4.6 아동노동 금지

- 4.6.1 협력사는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이란 현지 법률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연령 기준으로 합니다.
- 4.6.2 협력사는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4.6.3 협력사는 아동노동에 관여되어 있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7 강제노동 금지

- 4.7.1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 4.7.2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 사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속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4.7.3 협력사는 신체적/정신적 속박이나 채무관계에 의한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안전/보건

5.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5.1.1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 5.1.2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안전보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결과 점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⁵을 운영해야 합니다.

5.2 기계 · 기구 · 설비의 안전 관리

- 5.2.1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야 합니다.
- 5.2.2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방호벽, 긴급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5.2.3 협력사는 임직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전 보호구는 임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5.3 비상상황 대응

- 5.3.1 협력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 5.3.2 협력사는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자체 수립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 5.3.3 협력사는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4 사고 관리

- 5.4.1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5.4.2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5.4.3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5 안전 진단

- 5.5.1 협력사는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임직원이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공간의 안전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결과는 임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기계 · 기구 · 설비를 개선해야 합니다.

⁵ ISO45001, KOSHA18001 표준 등(사업주의 자율방침을 기반으로 안전보건경영 원칙을 제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계획 수립, 실행, 점검 및 평가 활동을 수행하여 안전보건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국제적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ISO45001, 한국형으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KOSHA18001이 있음.

- 5.5.2 협력사는 안전 위험성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임직원에게 작업공간의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 5.5.3 협력사는 임산부, 연소자 등을 안전보건 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 이민자 등 기타 사회적 취약 임직원이 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6 보건 관리

- 5.6.1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5.6.2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표지, 조명, 냉난방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기숙사에는 적절한 외부인 출입제한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 5.6.3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작업공간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6. 경영시스템

6.1 기업 성명서 공시

- 6.1.1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해야 합니다.
- 6.1.2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경영진 신년 사, 내부지침,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사내에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6.2 담당자 선임

- 6.2.1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선임을 권장합니다.
- 6.2.2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 활동 계획 수립과 이행현황을 감독하는 관리자 선임을 권장합니다.

6.3 리스크 점검

- 6.3.1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6.3.2 협력사는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6.4 교육 및 소통

- 6.4.1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본 행동규범 관련 법률 및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 6.4.2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이행성과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6.5 정보 관리

- 6.5.1 협력사는 재무 정보를 비롯하여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6.5.2 협력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별 법률, 산업단체, 사업계약을 체결한 중요 고객사 등에서 해당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법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6 고충처리 제도 운영

- 6.6.1 협력사는 임직원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률 및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 또는 인지하거나,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 6.6.2 협력사는 임직원이 신고 등을 하였다든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6.7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관리

- 6.7.1 협력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 설계, 판매, 제조하는데 있어 계약을 맺은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에게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요소를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6.7.2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가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련 리스크 등을 인지한 경우,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8 규범 준수

- 6.8.1 협력사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해 서면이화 또는 서연오토비전이 지정한 제3자가 진행하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방문 시 본 행동강령 준수 여부 및 이행 수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6.8.2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작성·관리⁶해야하며, 해당 문서는 사업 운영에 대한 실제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6.8.3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에 대한 서면점검 혹은 현장방문을 통해 도출된 결함이나 위반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⁶ 적절한 문서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작성)에 따라 작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공표)에 따라 작성한 산업재해 및 질병발생 기록’,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작성신고)에 따라 작성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에 따라 작성한 임금액 등에 관한 사항’ 외 윤리현장 준수 동의서, 비상상황 매뉴얼, 근로시간 기록 일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등 본 행동규범의 요구사항과 관련되어 있거나, 이행수준 평가 시 지표별 답변근거로써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함.

7. 부칙

7.1 본 윤리강령 실천규범은 2025년 01월 02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